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January 11, 2023

은행 & 금융

1. 해외 차입 및 상환에 대한 Circular 12의 주요 내용

베트남 중앙은행(이하 “SBV”)은 2022년 11월 15일 베트남 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등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 및 비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차입(Foreign Loan 또는 Overseas Borrowing, 이하 “해외 차입”) 및 상환하는 것에 관한 외화 관리 규정인 Circular 03/2016/TT-NHNN(이하 “Circular 03”)을 일부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를 위한 Circular 12/2022/TT-NHNN(이하 “Circular 12”)을 시행하였음. Circular 03과 비교하여 변경 및 신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1. SBV에 등록이 필요한 해외 차입 및 등록사항 수정

Circular 12에 따르면 아래 해외 차입의 경우 SBV에 등록이 필요함.

- (i) 중장기(mid-long term) 대출¹
- (ii) 단기대출 중 원금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기간으로 연장된 대출
- (iii) 단기대출 중 첫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계약이 없는 대출²

기존에는 SBV에 등록된 해외 차입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 SBV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주의 SBV에 대한 통보(notification)만으로 수정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

- (i) 이자 및 비용의 산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이자 및 비용의 납부 일정만 변경된 경우
- (ii) SBV에서 기 승인된 대출액, 상환액, 이자액, 비용이 차입 외화의 100단위 이내로 변경된 경우(증액 및 감액 모두 포함)

¹ Circular 12/2014/TT-NHNN 제2.1조 및 제2.2에 따라 정부에 의하여 보증되지 않는 대출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단기대출,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장기대출로 구분

² 단, 차주가 첫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 30영업일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다면 등록은 불필요(Circular 12 제11.3조)

- (iii)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액이 SBV에서 기 승인된 그 기간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 (iv) 같은 성(Province) 또는 시(City) 내에서 차주의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계좌 은행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

그 밖에 Circular 03은 해외 차입 계약이나 수정계약의 등록은 그 대출 계약이나 수정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Circular 12는 이 등록 기간을 30‘영업일’ 이내로 개정함.

1.2. ‘보증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 제도 도입

Circular 12는 ‘보증 관련 거래를 지원하는 은행(Bank Supporting Security Transactions, 이하 “지원 은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베트남 내 신용기관 또는 외국 은행의 지점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지원 은행은 반드시 한 은행만 지정할 수 있으며, 해외 차입 계좌의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도 지원 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지원 은행의 주요 역할 및 책무는 다음과 같음.

- (i) 보증 의무 이행 또는 담보 실행으로 발생한 금원에 대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
- (ii) 위 송금 서비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보관함
- (iii) 차주 또는 차주 계좌의 개설은행 및 권한 당국이 송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정확한 송금 정보의 제공
- (iv) 지원 은행과 해외 차입에 사용된 계좌 개설은행이 다른 경우, 지원 은행은 위 송금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송금을 통하여 채권자에 변제된 금액(원금, 이자, 비용 포함)을 계좌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송부하여야 함

1.3. SBV에 대한 해외 차입 이행 상황 신고 주기 및 방식 변경

Circular 12 시행에 따라 해외 차입에 관하여 차주의 SBV에 대한 신고는 기존 분기별 신고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되었음. 한편, 해외 차입에 대한 이행 상황 신고는 SBV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변경됨.

2. 베트남 국회 자금세탁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택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제4차 회의에 참석한 488명의 의원 중 483명의 찬성으로 자금세탁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Law on Money Laundering Prevention & Control) 개정안을 채택하였음. 개정안은 4개 장(Chapter)과 66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3월 1일에 시행될 예정임.

개정안은 자금세탁 탐지, 자금세탁 행위에 가담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처벌, 자금세탁 예방과 통제에 대한 당국·단체·개인의 책임, 국제적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형법 및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를 규정한 법령과 함께 개정안을 통하여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제조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함.

1. 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한 불법 수익에 대한 Circular 시행

베트남 정부는 위조 또는 금지 물품을 생산·판매·거래하거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³하여 발생한 불법 수익에 대한 행정제재를 규정한 Decree 98/2020/ND-CP(이하 “Decree 98”) 제91.2조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Circular 65/2022/TT-BTC(이하 “Circular 65”)를 발표하였음. Circular 65는 기존 규정인 Circular 149/2014/TT-BTC(이하 “Circular 149”)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Circular 65는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단체가 베트남 내에서 거두어들인 불법 수익에 적용되며, 위반 당사자의 불법 수익에 대한 강제적 환수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 법인세 예납액 및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Decree 시행

베트남 정부는 2022년 10월 30일 조세행정법(Law on Tax Administration)에 대한 Decree 126/2020/ND-CP(이하 “Decree 126”)를 대체하는 Decree 91/2022/ND-CP(이하 “Decree 91”)를 발표 및 시행하였으며, 특히 Decree 91은 법인세 예납액(Provisional Quarterly Corporate Income Tax) 문제와 베트남 내 이커머스 플랫폼(e-commerce platform)의 신고 의무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음.

Decree 126은 과세 연도의 첫 3분기 동안의 총 법인세 예납액은 연간 총 법인세 납부액의 7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Decree 126에 따라 3분기 동안 납부한 예납액이 연간 총 법인세 납부액의 75%에 미달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분에 대한 지연 이자액을 부담하였는데, 이 규정은 4분기에 수익이 급증한 회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따라 Decree 91은 과세연도 중 ‘4개 분기’ 동안 납부한 법인세 예납액이 총 법인세 확정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개정하였음.

한편, Decree 91 시행으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분기별로 과세 당국에 물품 매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판매자 성명, 과세 번호, 신분증 번호, 여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및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주문으로 발생한 수익 등과 관련된 정보 포함)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함.

3. 통신법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

현재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통신법(Law on Telecommunication) 개정 초안을 준비하고 있음. 개정 초안은 11개 장과 7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논의는 2023년 5월 국회 회기에서 이루어진 후 2023년 10월 국회 회기에서 최종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³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 또는 거래하여 불법 수익을 거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i) 통신 서비스 영역: 해외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제 및 통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를 보충함.
- (i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통신법에 새로 추가되는 영역으로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을 위한 조건, 사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콘텐츠 규제 포함.
- (iii) OTT(Over the Top) 서비스 관련: OTT 서비스를 통신법상 통신 서비스의 일종으로 규정함. 해외 OTT 서비스 사업자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베트남 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OTT 사업자의 네트워크 보안 관련 규제 및 사용자 정보 보호 등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 포함.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길영민 변호사 | T. +84-28-3827-4214 E. ymgil@shinkim.com |
| • 박지환 변호사 | T. +84-28-3827-4514 E. jhpark@shinkim.com |
| • 김홍주 변호사 | T. +84-24-3245-4013 E. hoj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